

유화종합통장 약관

제1조(통장의 용도) 유화종합통장(이하 통장 이라 합니다.)은 채권의 장외매매 신주인수권증서매매, 양도성예금증서매매, 그 밖의 장외거래를 위하여 이용되는 종합통장을 말합니다.

제2조(장외거래에 관한 유의사항) 장외거래는 상대매매이므로 동일종목이 동일시각에 매매되더라도 증권회사에 따라 매매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장외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제3조(예탁자산의 보관, 관리) ① 예탁한 증권은 다른 고객이 예탁한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으며 고객이 증권을 인출하는 경우 회사는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홈페이지(www.yhs.co.kr, 고객센터→초보자가이드→입출금)에서 게시한 예탁금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③ 본 통장에 의해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배정주식의 자동입고처리를 위해 별도의 위탁계좌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예탁한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대행 신청은 청약마감일 전일까지 유상청약신청서로 하셔야 합니다.

④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만기일에 대한 통지는 본 통장의 기재로 대신하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제4조(지급 등의 처리) ① 회사는 지급청구서 그 밖의 제신고 서류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급, 그 밖의 처리를 합니다.

② 서명에 의한 거래시 회사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미수금 등의 처리) 고객이 현물위탁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날(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익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총당합니다.

제6조(사고증권의 처리) ① 사고증권이라 함은 분실, 도난, 멸실 등의 사유로 그 점유를 망실한 증권과 오손, 훼손 등으로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게 된 증권 및 법원으로부터 권리가 없다고 판결된 증권, 위조 및 변조된 증권을 말합니다.

②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교환하여 예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예탁된 사고증권을 예탁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7조(계좌간 자금의 이체) 고객이 사전에 회사와 이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예탁금을 이체하여 드립니다.

제8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통장, 인감 등을 분실, 도난, 멸실하였거나 상속, 유증 또는 인감, 비밀번호, 주소 등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9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0조(관계법규의 준용)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11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